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72호 2013. 10. 14.(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57호(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719호(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2

회							
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0. 1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67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749-7594 ~ 75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0.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일자	위탁 기간	비고
반짝별 어린이집	연수구 청학로 40(청학동)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 167.12㎡	29명	2007.12.17	2013.12.17 ~ 2018.12.16	시간연장 어린이집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3. 위탁운영신청자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개인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단, 고용된 원장의 경우 제외)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등
-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아동 수요발생시 필수운영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시 인건비 지원 중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3. 10. 11 ~ 2013. 10. 27 (17일간)**
- **접수기간 : 2013. 10. 28 ~ 2013. 11. 4 (8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6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 공휴일 접수 및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간(2013.10.28~11.4)내 제출하되, 동산 등 기타 재산(은행잔액증명, 유가증권사본 등 증명서)과 부채증명(개인신용정보조회서)은 2013. 11. 1일자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지참)**
 - ※ 위임장(임의 작성) 제출 시 위임 가능
- **선정심의일 : 별도 통지**

7.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0	0	0	
2.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13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등	0	0	0	-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 취약보육계획 2개이상 포함
3. 재정상태 및 요약서	0	0	0	
4.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0	0	0	
5.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0	0		별지 작성
6.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0			
7.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0		
8.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0	0		
9. 2011년, 2012년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0	0		
10. 2011년, 2012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0	0		
11.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0	0	0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12. 자격증사본(원본지참)	0	0	0	
13.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0	0	0	
14.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0	0	0	
15. 채용신체검사서	0	0	0	법인, 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16. 인감증명서(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의 인감)	0	0	0	용도 : 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17. 주민등록등본			0	
18.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0	0	0	재산입증자료는 공고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19.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0	0	0	개인(부부 재산)
20.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2013.11. 01기준 발행분) - 개인신용정보조회서(2013.11.01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0	0	0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21.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0	0	0	해당자만 제출
22.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자원봉사,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0	0	0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연수구청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참조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 / 목차·쪽수 명시)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심사기준표
-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대표및 원장전문성	운영체의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선정방법

-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원장 내정자)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단수(한명 또는 한개 법인·단체)일 경우에도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발표 및 응답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의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참석 불가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

단체의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선정결과 통보

- 위탁자(체) 선정 익일 개별 통지 및 연수구청 홈페이지 게시

9. 유의사항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별도통지)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0. 기타 사항은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담당자(전화 032-749-77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